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한 회계 · 적법 세금 성공 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1 / 7 / 21 토크인 1528호

CEO·CFO·COO · 회계책임자 · 조세전문가 · 재정실무자 · 총무담당자 · 모든 관리직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에너지부를 신선했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중 회계사 :

창업·기업경영은 "회계하고 세금 낸 후 이익낸다"와
동의어다(10단계 10세금)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자금거래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는 이자징수
명세서 등이 지출증빙임
-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운용 및 핀테크(Fintech) 플
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색션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라도 상시주거용으로 임
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됨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 과거 창업시 직원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의 환원방법과 세금계산 >

- 창업시 일부 직원에 명의신탁 지분분산하였는데, 10년째에 이직하는 경우임(명의신탁주식
원금 1천만원, 기업경영실적 좋아 현재의 가치평가액이 10배 오른 1억원으로 가정)

개념구분	① 과거 명의신탁증여세	② 현재시점 주식양도로 거래	③ 현재시점 증여로 증결
거래방법	명의신탁하였던 과거시점 의 증여로 신고함	과거는 직원 자기불입으 로 보고 현재시점 양도 로 함	과거 직원불입 불분명하 여, 현재시점의 반환 증 여로 함
주식을 실질주주로 환원하기 위한 세금계산 방법	① 10년전 명의신탁 증여세 = 1천만원 × 10% = 100 만원 ② 무신고가산세 20% 100만원 × 20% = 20만원 ③ 미납부가가치세율(2020 년까지는 하루당 10,000 분의3 = 1년당 약 11%) 100만원 × 11% × 10년 = 1,100,000원 ①, ②, ③ 세금합계 = 100 만원 + 20만원 + 110만원 = 230만원	① 양도소득 : 양도가 1 억원 - 취득원가 1 천만원 - 250만원 = 87,500,000원 ② 중소기업인 경우 양도 세율 10% 적용시 세 금 = 8750만원 × 10% = 875만원 × 1.1 = 962 만원 ③ 일반 기업이면 양도세 율 20% 세금 : 8750만원 × 20% × 1.1 = 1925만원	① 증여금액 1억원, 제3자 명의신탁이면 증여공 제액 없음 ② 증여세금은 1억원까지 × 10% = 1천만원임 ③ 평가액이 1억초과 5억 까지는 20%, 5억초과 10억까지는 30%, 10 억 초과 30억까지는 40%, 30억 초과액은 50%임
결론	명의신탁 주식기준금액이 소액인 경우 명의신탁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①, 10년간 가산세를 계산해도 증여기준금액이 원래 적어 총 세금은 적음. 현재주식평가액이 증여세율 10% 구간인 1억원 내외이면 현재의 증여방법 ③도 큰 부담이 아님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 · 경리 · 세무 · 재무 · 인사 · 노무 · 총무 · 법무 · 기획 · 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 · 보육 · 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안세재경저널 회원용 · 2021년 7월 21일(수) · 주간제 29호 · 토크인 1528호 ·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 구독료 월 30000원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28 호 / 주간 29호

2021. 7. 21.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7575
 팩스: (02) 718-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3988
 팩스: (051) 642-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9761
 팩스: (053) 627-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2427
 팩스: (042) 526-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문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지원
- ⑩ 세무·회계·재경교론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과거 창업시 직원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의 환원방법과 세금계산	표지
긴급시사해설	창업·기업경영은 "회계하고 세금 낸 후 이익낸다"와 동의어다 (10단계 10세금)	2
CEO에세이	에너지부를 신설하라	3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우리사주 배당소득 처리문의 - 리스 - 공장동내 락커룸 확장 시 자본적지출 여부 - 부가가치세 가산 여부	5 6
눈에 맞는 절세미인	자금거래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는 이자징수명세서 등이 지출증빙임	7
매일 절세 재무요점	- 현행 R&D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 중소기업 환급금 조기지급 확대지원 대상	9 10
직장인 Survival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10가지 대화법	11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매매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1216, 2021.01.22)	12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사전법령법인-1138, 2021.01.22)	13
세정뉴스와 해설	회계기준 위반 내부감사에 과징금 부과...외감법 개정 후 첫사례	14
마케팅 Tax consulting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라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됨	12
세무정보	-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운용 및 핀테크(Fintech)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	15 39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를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

창업 · 기업경영은 "회계하고 세금 낸 후 이익낸다"와 동의어다 (10단계의 10세금)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증여·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처음 배우는 단어 : 엄마, 얼마예요(회계프로그램 명칭), 더존, 세무사랑 등

단계별 행위	창업, 사업, 경영, 회계, 세금행위
기본세금들	매입 · 매출거래의 10% 부가세(+판매시 개별소비세), 근로소득 · 사업소득의 소득세(원천징수), 법인이익의 법인세
①법인설립	자본금 불입, 설립등기와 사업자 등록 : 자본금등록세, 인지세 등(개인사업자는 법인설립비용 해당안됨)
②직원 채용	본인이 업무수행 : 자기급여 원천세, 직원급여의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③원재료 구입	외부에서 구입대금의 10% 매입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로 환급)
④제조생산	생산시설의 취득세+부재료 구입이나 외주가공비 지급시 10% 매입세금계산서, 용역비의 3.3% 원천세
⑤자금관리	① 외부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금융회사는 원천징수 없음), 개인차입금은 27.5% 원천징수후 이자 지급 ②잉여자금예금 · 투자의 수입이자(원천세 15.4% 차감 후 순액 입금)
⑥사업자 급여	개인사업자는 자기급여와 당기이익에 종합소득세 과세, 법인이면 대표 급여의 근로소득과세와 4대보험 납부 등을 뺀 금액이 법인이익임
⑦중도퇴직급여	근로자 중 퇴직자의 퇴직급여 지급과 퇴직소득세
⑧법인이익	법인이익 = 매출 - 매입 - 각종비용원가 - 대표자 · 경영자급여 = 과세표준 × 법인세율(10~20%) × 1.1배
⑨법인배당	• 법인세 납부 후의 세후순이익과 누적잉여금의 배당시 배당소득원천세 15.4% 징수 • 배당소득자는 [배당소득(+11% 총액화가산) + 다른소득]의 종합소득세 계산 - 배당원천세 - 배당액 × 11% = 납부액
⑩상속증여	법인주식 · 지분, 재산증여의 증여세와 가업증여 · 상속 · 승계시의 세금감면혜택 등(중소기업 등 가업상속공제는 200~500억원 적용됨)

에너지부를 신설하라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지난 5월의 당·청간담회는 한마디로 임기말 동상이몽이었다.

백신·부동산·반도체·기후변화·남북대화 등 다섯가지 '송영길표 정책아젠다'도 제시했다. 원전 등 민감한 사안도 거론했다. "바이든 정부가 탄소중립화를 위해 SMR(소형모듈원자로)분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미의 전략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깊이 공감한다. 탈원전은 워낙 협소하고 경박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정권초 80%이상의 지지율이 30%대로 급감한 이유와 2030세대의 10~20%대의 지지율에 대한 이유에 크게 반성하는 회견이어야 했다. 특히 다섯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지난 4년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문제"라며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죽비를 맞은 정도가 아니다.

임대차3법 시행직전 자신의 소유 강남아파트 전세값을 14% 올려 받은게 알려져 지난 3월 갑자기 퇴임한 김상조 청와대 전 정책실장의 "다른 경제정책 성공해도 부동산 실패하면 모든 게 팡!"이라고 공언한 것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4년 내내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한 것이 허언이 됐기 때문이다.

둘째, 지각백신에 대해 "좀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정도여선 안된다. 현장의 애로와 불만과는 거리가 크기 때문이다. 또 페레즈 이스라엘 경제장관의 "백신이 곧 경제의 최고부양책"이라는 말이 현실이 아닌가.

셋째, 대북협상도 무조건 북쪽의 집권층에 대해 참고 아부 비슷한 입장을 취하는 게 능사는 절대 아니다. 잘·잘못을 정확히 짚어주는 게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경제협력에도 최선이기 때문이다.

넷째, "백신 안 급하다"던 암관리학자를 청와대 비서실에 방역기획관을 신설해 앉히는 인사는 크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인 설판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탈원전에 대한 절박한 반성이 있어야 했다. 금년초 빌 게이츠 조차 "한국, 탄소

제로하려면 원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NCC(국제원자력협력센터)에 의하면 발전원별 CO² 배출량(g/kwh)이 석탄991, 석유782, 태양광54, 풍력14, 원자력10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유럽(EU)은 재작년에, 미국 민주당도 48년만에 작년 '원자력지지'로 입장을 선회했다. 대단한 혁신이었다. 2030년까지 전체전력의 80%를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중국 또한 원전강국으로 달리고 있다. 한국은 이미 APR-1400이라는 안전성, 경제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세계 최고의 한국형 원자로를 수출까지 한 나라다. 이제 SMR(소형모듈원자로)을 다시 출범시켜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인류의 큰 고민거리인 기후변화를 제어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한다. 월성1호기 폐기를 철저히 반성해야 했다. 사망도 없는 나라에서 태양광은 비효율이다.

풍력 또한 독일에서는 이웃에 두지 못하게 주민들 반대가 심한 시스템이다. 이런 종합적인 국가대안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처럼 전문적이고 역량있는 '에너지부를 신설'해서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7월 9일 (금)	7월 12일 (월)	7월 13일 (화)	7월 14일 (수)	7월 15일 (목)
미 달 러 (USD)	1143.40	1148.30	1146.40	1145.10	1150.30
일 본 엔 (JPY)	1041.21	1042.35	1039.02	1035.40	1045.87
캐 나 다 달 러 (CAD)	911.91	922.48	920.32	914.98	919.58
홍 콩 달 러 (HKD)	147.20	147.83	147.61	147.45	148.11
위 안 화 (CNH)	176.51	176.91	177.00	176.88	177.51
유 로 화 (EUR)	1354.24	1363.61	1360.03	1348.76	1361.61
호 주 달 러 (AUD)	849.49	860.13	857.34	852.36	860.83
싱 가 폴 달 러 (SGD)	845.24	849.81	848.15	844.81	850.09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73.44	274.02	273.51	273.16	273.85

우리사주 배당소득 처리문의

Q 우리사주 배당소득 처리시 미배정 주식의 경우 소유주를 우리사주조합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에 소득처리를 따로 진행할게 있는지 확인부탁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위의 소득처리한 미배정 주식의 추후 나중에 배정이 되는 경우 어떻게 소득처리 하면 되는지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해당부분에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서 되도록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우리사주조합의 미배정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의 소유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조합 소유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합소유의 미배정주식을 추후 배정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사주조합의 미배정주식에 대한 소유주 처리여부 및 추후 배정 등과 관련된 내용은 세법 사항이 아니므로 관련 기관에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

리스

Q 해당 물건을 리스로 판단해도 될지 의아해서 문의 드립니다.
 최초 한국캐피탈의 리스계약을 실행하여 취득한 설비를 리스설비로 처리하였으나 1금융권으로 차입 대환하였음
 차입대환의 조건은 1금융권으로 설비 양도담보 설정하였고 소유권은 1금융권에 있음(금융거래확인서 상 담보물건내역에 제외)
 양도담보로 소유권이 금융기관에 있는 점에서 리스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판매후리스 거래로(담보부차입) 판매로 인식하지 않고 금융부채로 인식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A 소유권의 이전 여부로만 리스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닌데, 귀사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계약관계 등을 알 수 없는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법인이라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공장동 내 락커룸 확장 시 자본적지출 여부

- Q** 공장동 내 락커룸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본적지출 처리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공장동 내 락카룸과 공구보관실이 있고, 락카룸 확장을 위해 공구보관실과의 벽(샌드위치판넬)을 허물고 확장을 진행함
 - 샌드위치 판넬 철거, 도색 및 바닥 등 인테리어 등의 비용이 발생할 예정
 - 금액적으로는 건물의 5% 이상 으로 수익적지출처리 불가
- 이럴 경우에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등으로 판단하여 자본적지출처리가 가능한가요?

A 자본적지출은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에 대하여만 반영하는데, 귀사의 공장동 락커룸 확장비용이 해당 공장건물의 본질적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경제적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수익적지출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가산 여부

- Q** 해외 업체의 기계를 국내의 업체에 소개해 주고 판매수수료를 수령하려고 합니다. 용역이 한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 업체로부터 수수하는 판매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를 추가하여 받아 부가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는지요?

A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상품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 입증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금거래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는 이자원천세명세서 등이 지출증빙임

상담실 백종훈 차장

법인은 지출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입수하여야 하며, 특히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증빙영수증을 입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설비확충이나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이나 또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출과 관련된 증빙을 입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금융기관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징수명세서 등이 지출증빙이 됨

이자를 지급하는 거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때에는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였다는 표시인 원천징수영수증이 증빙이 된다.

하지만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뒤 지급하는 이자의 경우에는 법인세 법상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뒤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이자액의 전액을 지급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영수증도 구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금융기관 등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출거래장상의 이자납부내역 또는 은행의 이자징수명세서 등을 지출증빙으로 첨부하여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금융기관이더라도 영업인가가 취소되거나 파산으로 인해 설립된 파산재단은 법인세법상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반드시 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을 하여야 한다.

♣ 서일-872, 2007.06.25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 후의 것)" 제111조 제2항에 규정된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내의 금융기관이 아닌 해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뒤 지급하게 되는 이자 비용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따라서 해당 해외국가와의 조세조약이나 국내세법(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처리하면 된다.

♣ 서이46017-11558(2002.8.23.)

내국법인이 일본은행(일본의 중앙은행 및 일본정부·중앙은행 또는 양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일본은행 국내지점이 당해 차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일본은행 본점이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한·일조세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총액의 10%(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영수증

타인이나 관계사 등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하여 적정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또한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비용(=손금)인정이 가능하다.

이때의 지급이자에는 거래 상대방이 금융업을 주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한다.

따라서 해당 증빙으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 및 보통예금 통장사본 등을 비치하고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면 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현행 R&D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R&D비용(%)	대	중견	중소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반	2	8	25	일반	1	3	10	3
신성장· 원천기술	20~30		30~40	신성장· 원천기술	3	5	12	

향후 추진계획

R&D비용(%)	대	중견	중소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반	2	8	25	일반	1	3	10	3
신성장· 원천기술	20~30		30~40	신성장· 원천기술	3	5	12	
핵심전략기술	30~40		40~50	핵심전략기술	6	8	16	4

화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연기) 방안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 • 60세 이상 고령층 • 전년 소득 3000만원 이하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 증여 등 소유권 변동 때까지 납부 유예 • 해당 주택을 납세담보로 제공 • 납부유예한 세금에 매년 1.2% 정도의 이자 부과



중소기업 환급금 조기지급 확대지원 대상

중소영세	①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2021년 7월 확대)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지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3조) ④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⑥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2021년 추가)
피해기업	⑦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⑧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 주요 내용

시행	2021년 6월 1일(2022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대상지역	수도권 전역, 지방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의 시 지역(군 제외)
대상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중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대학교·고등학교 등 학교 기숙사 신고 대상에서 제외, 단 회사기숙사는 신고 대상)
신고	계약 체결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 위임 허용 신규·갱신 계약 모두 신고,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
과태료	기간·계약 금액 등 비례 4만~100만원 차등 부과 허위신고시 100만원(계도기간 중 과태료 미부과)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10가지 대화법

1. 진심으로 좋아하라.
누구나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 푸블리우스 시루스
2. 마음으로 경청하라.
내 귀가 나를 가르친 스승이다 - 칭기즈칸
3. 평등하게 존중하라.
인간은 저마다 신의 아들이므로,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면 저절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헨리 카이저
4. 대인배처럼 인정하라.
너도 옳고, 그도 옳고, 나도 옳다 - 황희
5. 백번 인내하라.
화가 나거든 열을 세라. 열까지 세도 안 되면 백까지 세라 - 토마스 제퍼슨
6. 폭넓게 이해하라.
그 친구가 싫어서 사귀어 볼 생각이야. 그 친구에 대해 좀 더 알아야 할 거 같아서. - 에이브라함 링컨
7. 함부로 비난하지 마라.
함부로 뱉은 말이 상대방 가슴을 뚫는다 - 롱펠로우
8. 따뜻하게 칭찬하라.
좋은 말을 베푸는 것이 비단옷을 입히는 것보다 따뜻하다 - 순자
9. 활짝 웃어라.
웃음을 아끼는 자가 가장 인색한 자다. - 바덴
10. 유머를 이해하라.
운과 유머가 세상을 지배한다 - 하비 콕스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라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됨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매매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1216, 2021.01.22

질 의

-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회 신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당초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교회가 야외 예배처로 사용하였다는 쟁점임야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서면법인-4277, 2020.05.26

질 의

- ○○○○○교회(이하 '질의회'라 함)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 '10.1.12. 충남 ○○시 ○면 ○리 산 130-3(13,557㎡, 이하 '쟁점임야'라 함)를 증여받아 야외 예배처로 사용함

질의요지

- 10년간 교회의 야외 예배처로 사용한 임야의 처분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에 해당되어,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 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야를 처분함으로써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임야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위배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법령재산-930, 2020.11.30

질 의

- 상속인이 가업으로 상속받은 주식이 아닌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사후 추정요건인 상속세및증여세법§ 18⑥(1)다목의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이하 "쟁점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설〉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이 아닌 이전부터 소유하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 후에도 상증령§ 15③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쟁점규정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사후 추정요건으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보유 주식과 상속받은 주식을 포함하여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규정을 엄격히 해석해야 함

회 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9.12.31. 이전 상속분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

분 후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사전법령법인-1138, 2021.01.22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특례 적용대상 내국법인이「기업구조조정촉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 등의 재무구조개선 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이 아닐 경우에도 해당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내국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기업개선계획 이행 특별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약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및 양도할 자산의 내용, 양도계획을 통한 상환계약을 명시하고, 그 상환계획에 따라 자산양도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회계기준 위반 내부감사에 과징금 부과... 외감법 개정 후 첫사례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상장법인(썬리드의 전 업무집행지사(회장)에게 6억9천250만원, 전 대표이사에게 5억6천960만원, 전 담당임원에게 1억6천610만원, 전 감사에게 1천35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인 리드는 2017~2018년 경영진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약 800억원 상당의 대여금을 허위계상했다.

또 보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기계장치를 매입한 것처럼 회사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는 매출을 과대 계상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2018년 11월 시행된 개정 외감법에 따르면 회계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 과실이나 고의성 정도에 따라 감사보수의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전에는 감사가 회계부정을 예방하지 못했어도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었지만, 법 개정으로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세무사법 개정안 조세소위 통과... 변호사에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제외

세무사법 개정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2004~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배제됐다. 1개월의 사전 실무교육도 받도록 했다.

14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16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 20대 국회에서는 입법 시한인 2019년 12월 31일을 넘기면서 세무사법 개정을 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을 통해 세무사와 변호사 양 측에 의견이 반영된 개정안이 각각 나왔다. 이 중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였으나 야당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강력히 펼치면서 계속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 조세소위에는 박형수 의원이 코로나19 밀접접촉자 관련 검사로 조세소위에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표결 없이 처리됐다.

지방세, '애매한 증부세' 과세체계... 보유 형태→보유 가격 기준변경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최근 종합부동산세의 성격을 부유세(wealth tax)와 비교분석한 '상위 2%에 대한 과세,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인가?' 이슈페이퍼(TIP)를 발간했다.

상위 2%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당시부터 어디까지 증부세 대상으로 삼을지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논의됐다. 증부세는 소득재분배를 위해 고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세금으로 상위 2%는 전체 인구가 보유한 재산 수준을 고려해 제시됐다.

증부세는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부유세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과세대상을 합산하지 않고, 다주택자에 대하여 중과세하며, 순자산이 아닌 총부동산 가치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부유세와 차별성이 존재한다.

쉽게 말해 보유한 재산의 가격만큼 세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어떻게 보유하는지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와 보유세 기능이 혼재되어 있다며,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를 살리려면 부유세처럼 전체 부동산 자산을 합산하여 과세할 것을 제안했다. 재산을 보유하는 형태가 아니라 보유한 재산의 가격만큼 세금을 물리자는 것이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 국세청, 2021. 7.

- (신고개요)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92만 명*은 7월 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개인 일반과세자 484만 명, 법인사업자 108만 개
 -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6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전자신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의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예정부과 제외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 경영이 어려운 개인 일반과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특히,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43.8만 명)는 납부기한을 2개월(9.30.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 *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사업자 기준
 - (예정부과 제외) 세법개정으로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4천8백만 원 미만) 되는 간이과세자(1.9만 명)는 예정부과 제외합니다.
- (사전안내)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 * ('20년 1기 확정) 91종, 97만 명 → ('21년 1기 확정) 91종, 107만 명(10.3%↑)
 -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7월 26일까지

- (신고개요)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개인 일반과세자 1. 1.~6. 30.(6개월), 법인사업자 4. 1.~6. 30.(3개월)
 - 이번 신고 대상자는 592만 명(개인 일반 484만, 법인 108만)으로, 2020년 1기 확정신고(559만 명) 때보다 33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 간이과세자(2.9만 명)는 직전 과세기간('20. 1. 1.~12. 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30만 원 미만 제외)을 7월 26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신고편의를 위해 홈택스 이용시간을 기존 24시까지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

기존		⇒	연장 운영	
7. 1.~7. 26.	매일 06:00~24:00		7. 1.~7. 25.	매일 06:00~다음날 1시까지
		7. 26.(마감일)	06:00~24:00	

- (방문자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으니 세무서 방문없이 비대면 방식의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유형	신고방법	대상자
전자신고	홈택스	인터넷(PC) '홈택스' 접속	모든 사업자
	모바일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앱 실행	모든 사업자 중 일부* 제외 *영세율·재활용·면세·의제 매입 해당 사업자
	ARS	☎ 1544-9944로 전화	무실적 사업자
우편신고	서면	신고서를 우편 발송	모든 사업자

2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1 개인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관련 세정지원

- (신청 연장) 개인 일반과세자가 경영이 어려워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직권 연장)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영업제한¹⁾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2개월(9. 30.까지) 직권²⁾ 연장합니다. (43.8만 명)
 -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사업자(중기부 수보)
 - 2) 21년 제6차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21. 6. 30.)
- 납부기한만 연장(9. 30.까지)되는 것으로 신고는 '21. 7. 26.(월)까지 해야 하며 별도 안내문(참고4-1)을 발송(7. 12.)합니다.

2 개인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관련 세정지원

- (예정부과 제외) 세법개정(부가법 §69①)에 따라 22년 1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 무 면제* 적용이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를 7월 예정부과에서 직권 제외합니다. (1.9만 명)
 - * 종전 연매출 3천만 원 미만에서 4천8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소 업종)
- 예정부과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별도 안내문을 발송(7. 12.)하며, 21년 연간 실적을 '22. 1. 25.까지 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 (징수유예 신청)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에서 납부유예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확대 등 세정지원

-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조기환급) 지원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7월 30일(금)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 * 법정지급기한인 '21. 8. 10.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 특히, 이번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완화(5년 → 3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지원 대상 |

중소 영세	①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21.7월 확대] ②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 지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⑥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21년 추가]
피해 기업	⑦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⑧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 (일반환급) 영세사업자(직전년 매출액 10억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 보다 약 10일 앞당겨 8월 16일(월)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납세유예)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한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참고5)
○ (신청방법)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우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

3 비대면 신고서비스 강화를 통한 신고편의 제고

1 세무서 방문 없이 안전한 홈택스로 전자신고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 (신고서 작성 책임) 신고서는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며, 신고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대리작성 금지)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직원이나 신고도우미는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 (도움창구) 다만, 자기작성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 신규 영세사업자 등에 한

해 신고 도움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전자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 안내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 (동영상 게시) 6개 주요 업종별* 전자신고 방법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홈택스에 게시하였습니다.
 - * 부동산임대, 음식, 도·소매, 건설, 제조, 화물·운수
 - (매뉴얼) 업종별 신고작성 사례 등 신고 관련 유용한 정보*를 담은 안내 매뉴얼을 국세청 누리집(참고자료실)에 게시합니다.
 - * 전자신고·납부요령, 신고 시 유의사항, 세법개정 사항, 신고내용 확인 적출사례 등
 - (카드뉴스) 신고에 유용한 팁(Tip)을 이해하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정책홍보 인터넷 매체* 등에 게시합니다.
 - * 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稅상' 및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스토리 등
 - (챗봇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 응답형 실시간 '챗봇 상담서비스'(7. 1.개시)를 제공합니다.
 - * (접근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세 신고 챗봇

② 납세자 중심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제고

- (홈택스 내비게이션 도입) 홈택스 접속 시 부가가치세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단계*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을 제공(7.1.개통)합니다.
 - * 부가가치세 안내문 선택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관리 > 납부
-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챗봇 상담'과 '인터넷 상담' 메뉴, 내비게이션 버튼에 '말풍선(마우스 올리면 나타남)' 설명 기능을 추가하여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모의계산 제공) '21년 간이과세자 세법개정*에 따라 납세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세액비교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참고8)
 - * 간이과세 기준금액 : (기존)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개정) 8,000만원 미만
- 유형전환(일반 ↔ 간이) 대상 사업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담세액을 사전 비교하고, 유리한 과세유형을 선택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접속경로)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모의계산
- (조기환급 체크리스트 제공) 홈택스에서 조기환급 신고 서식 선택 시 알림창을 통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납세자에게 안내하여 신고편의를 제고합니다.

③ 현지 도움창구 설치 · 운영으로 신고지원

- (현지 도움창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문신고 분산과 혼잡 방지 차원에서 방역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현지 도움창구를 별도 설치합니다.
 - 신고기간 중 설치한 전국 73곳의 전통시장과 시·군·구청 등의 현지 도움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청별 현지 도움창구 운영 현황 〉

지방청	세무서	현지 도움창구		
중부청 (9)	홍 천	인제터미널 민원실	춘 천	지역민원실(화천, 양구)
	이 천	여주시청,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삼 척	지역민원실(동해)
	동수원	오산시청	원 주	봉평전통시장상인회
	남양주	청평면 행정복지센터		
인천청 (2)	인 천	영종출장소	김 포	강화군청
대전청 (8)	동청주	지역민원실(괴산, 증평)	대 전	지역민원실(금산)
	영 동	지역민원실(옥천, 보은)	홍 성	지역민원실(청양)
	보 령	지역민원실(장항)	서 산	지역민원실(태안)
광주청 (29)	진 주	완주군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광 주	화순군청, 곡성국민회관
	남 원	순정축협, 임실군청, 장수군청	광 산	광산세무서 영광민원실
	북광주	담양군청, 장성군 행정복지센터	여 수	거문도수협
	나 주	영암공설운동장, 함평군민회관		
	목 포	면사무소(도초면, 암태면, 신의면), 흑산종합복지관, 무안군청		
	해 남	지역민원실(완도, 진도), 장흥군청, 농협(송지땅끝, 화원, 노화, 완도 고급지점)		
	순 천	군청(구례, 고흥, 보성), 광양읍사무소, 고흥군수협건어물중매인조합		
대구청 (13)	서대구	한국외식중앙회 고령군지부	안 동	음식업지부(영양, 청송), 진보민원실
	남대구	달성군청	상 주	문경시민운동장
	경 주	감포읍 행정복지센터	영 주	지역민원실(예천, 봉화)
	구 미	출장소(왜관, 선산), 새마을중앙시장	영 덕	후포새마을금고
	경 산	청도군청, 하양곰바우시장		
부산청 (12)	마 산	군청(창녕, 함안), 의령읍사무소	창 원	지역민원실(진해)
	진 주	산청군청	제 주	읍면사무소(한림읍, 추자면)
	통 영	면사무소(사랑면, 육지면)	양 산	양산시청 웅상출장소
	거 창	지역민원실(함양, 합천)		

* 관할 세무서(누리집 게시)를 통해 현지 도움창구 세부 운영현황 확인 가능

4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으로 성실신고 지원

-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특히, 이번 신고부터 기존 유형*에 「대법원 주요 판례」 탭(Tab)을 추가하여 최근 확정 판결된 선고사건 사례를 안내합니다.
 - *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용분석, 세법개정, 세법해석사례
-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신고 변동 추세선·원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
-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인프라 등을 수집·분석하여 업종, 규모]등 납세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107만 명의 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합니다. (참고9)
 - * (20년 1기 확정) 91종, 97만 명 → (21년 1기 확정) 91종, 107만 명(10.3%↑)

| 주요 업종별 안내 항목 |

전문직 (5종)	● ①성형외과 지역별 평균 신용카드 매출자료, ②세무대리인 불복수입료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7종)	● ①부동산매매업자 양도(매매) 실적자료, ②부동산 임대차 개시자료
서비스 (13종)	● ①공인중개사 중개실적 자료, ②자동차 튜닝승인 내역 자료
도소매 (16종)	● ①휴대폰단말기 할부채권 양수도 현황자료, ②장애인보조기기 보조금 지급자료

- (거래투명성 강화·호황 업종) 현금거래가 많아 과세표준 양성화가 필요한 사업자와 코로나 19로 상대적인 호황을 누리는 사업자에 대해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유형	주요 안내 내용
자동차 해체 재활용 사업자	• 국토부로부터 폐차인수자료를 수집하여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체(폐차장 등)에 관련 매출액 성실신고 안내
반려동물 관련사업	• 반려동물 미용 관련 업종 중 미용용품 매입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온라인 판매 업체에 대한 매출 성실신고 안내
골프 관련업	• 골프장에 골프부킹앱(App)을 통한 수수료 수취내역 안내 및 골프용품 판매업체의 현금매출액 성실신고 안내
온라인 매출 관련사업	• 퍼스널 모빌리티(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제작·수리 업종을 추출하여 온라인 판매내역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 사업자의 경우 외환수취내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안내, 국내 광고수익 등 국내매출에 대해서도 신고의무 안내
생활형 숙박시설	•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매입공제 내역과 매출액을 안내하여 주거 사용 여부 확인 및 매출 성실신고 안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 온누리 상품권 환전금액을 수집하여 환전대행금액을 제외한 실 매출금액에 대해 성실신고 하도록 안내

-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입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있으므로, (참고10)
 -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 세무대리인 > 수입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 강화

- (성실신고 검증) 사업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합니다.
 - 특히, 신고내용확인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신고내용확인 추정 주요 사례 Ⅰ

- ①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을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면세로 전용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례
- ② 건물 신축을 위해 토지·건물을 일괄 구입한 후 노후 건물을 철거하면서 수취한 철거용역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사례
- ③ 임대인이 전기사업자로부터 공동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소비자(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당공제 받은 사례
- ④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업 관련 비용을 사업장별로 중복 공제 신고하여 이중으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례
- ⑤ 고객 유치를 위한 이동수단 목적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비영업용 승용차)를 임차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부당공제 신고한 사례

- 또한, 부당환급 사전차단을 위해 신고 종료 즉시 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합니다.
- 사업자분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1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4.1.~6.30.	7.1.~7.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 * 휴업 등으로 '21년 1~3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0년 7~12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1. ~ 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 ~ 1.25.까지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3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②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③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참고 2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모든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 (개인) 공동·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 (법인) 공동·금융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전자신고 (PC)	<p>또는 회원 접속 →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시간: 7.1~7.25. 매일 06:00~다음날 01:00 7.26.(신고마감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8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모바일 신고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우편신고 · 방문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시간: 2021. 7. 26.(월)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 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자진납부'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 07:00 ~ 23:30(연중 무휴)



<p>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 ~ 23:30(연중 무휴)
<p>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2용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p>세무서(무인수납창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현금수납창구)* 현금 납부 *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등에만 운영

참고 3 -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No	구분	제공 항목(총28개)	제공일정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1. 7. 14.
2		신용카드 매출	21. 7. 13.
3		현금영수증 매출	21. 7. 1.
4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1. 7. 15.
5		수출실적 내역(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1. 7. 11.
6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1. 7. 14.
7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1. 7. 14.
8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1. 7. 13.
9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21. 7. 1.
10		현금영수증 매입	21. 7. 1.
11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1. 7. 14.

12	공제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21. 7. 1.
13		재고납부세액	21. 7. 1.
14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21. 7. 1.
15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1. 7. 1.
16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21. 7. 1.
17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21. 7. 1.
18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21. 7. 1.
19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1. 7. 15.
20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1. 7. 14.
21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1. 7. 11.
22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1. 7. 1.
23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후
24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1. 7. 14.
25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1. 7. 14.
26		국고입금 예정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1. 7. 15.
27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1. 7. 15.
28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21. 7. 1.

참고 4 - 경영 어려움·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 주요 내용

-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청시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

● 지원 대상

- (경영 어려움)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구 분	지정일	지정기간 만료일	지정 지역	사유
고용위기지역 (고용노동부 고시)	'18.4.5.	'21.12.31. (1년 연장)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조선업 불황
	'18.5.4.		(전남) 영암군, 목포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산업통상자원부)	'18.4.5.	'22. 4. 4.	(전북) 군산시	
	'18.5.29.	'23.5.28. (2년 연장)	(경남) 거제시·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해남군·영암군·목포시	

- (재난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선포일	재난 지역	사유
'18.09.17.	(전남) 완도 보길면, (경남) 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태풍
'18.10.24.	(경북) 영덕군, 경주시 외동·양북면, (경남) 거제시 일운·납부면 (전남) 고흥군 동일면, 완도군 소안면·청산면	태풍
'19.04.06.	(강원) 강릉시·속초시·동해시·고성군·인제군	산불
'19.09.20.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	태풍
'19.10.10.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영덕군	산불
'19.10.17.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성주군, (전남) 진도군 의신면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태풍
'20.03.15.	(대구) 대구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질병

- (추가 연장)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최초 연장 3개월 이후 1개월씩)에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추가 연장

참고 5 - 비대면(untact) 전자신고 도움자료 제공 현황

제공내용	접속경로(방법)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6종) *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화물·운수업	홈택스 접속 후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 「전자신고 이용 방법(동영상) 보기」에서 확인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 자료실」에서 확인
	유튜브(Youtube) 접속 후 검색창 「국세청 유튜브」 조회 - 클릭
	모바일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부가가치세 동영상 자료실」 터치
신고안내 매뉴얼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매뉴얼(게시번호 1번) 확인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 소책자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소책자(게시번호 3번) 확인
카드뉴스	국세청 공식 블로그(아름다운 稅상),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토리에 게시
챗봇 상담서비스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챗봇」 클릭
신고도움서비스	(납세자용)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클릭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접속 후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인 공통」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과세기간 선택 후 「세무대리인 일괄 조회」 클릭
예정부과세액 확인	홈택스 접속 후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 예정부과 제외자는 '세정지원'으로 표시



참고 6 -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 도입

- (배경) 납세서비스 재설계를 위한 「홈택스 2.0」 구축의 일환으로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 도입
 - * '21.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에 처음 제공
- (주요 내용) 세금 신고안내문·고지서 등을 바탕으로 신고서 작성에서 납부까지 진행상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다음 해야 할 일(메뉴·화면)을 맞춤형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 (신고기간에만 제공)
 -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4단계(안내문 선택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관리 → 납부 하기)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신고 진행상황, 과거 신고내용, 신고 도움서비스(개별분석자료), 신고부속서류 제출도 함께 이용

참고 7 -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모의계산 프로그램 제공

- (현황) '21년도 간이과세자 관련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개정세법을 반영한 세액계산 프로그램이 부재하여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개발 추진
 - * 간이과세 기준금액 : (기존) 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 (개정) 8,000만 원 미만
- (추진내용) 유형전환 대상인 경우 과세유형(일반, 간이)별로 납부할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자동계산 프로그램 개발·제공

참고 8 -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 [예시]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매출	○ 토지 및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안분한 매매가액이 기준시가비율과 대사하여 적정한 지 여부 확인 필요성 안내
	○ 사업자가 유사 PG업체를 이용하여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신고 누락한 사례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는 사례
	○ 직원이나 친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을 신고 누락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실적명세서 및 수출통관자료와 상이한 영세율 신고금액 누락 사례 ○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장가맹점으로 부당 발급한 금액 신고 누락
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조기 환급신고 사업자가 환급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확정신고 납부세액만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한도액을 잘못 계산 ○ 사망자, 군복무자, 해외거주자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인건비 신고내역은 없는 대형 음식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 허위 공제 ○ 원재료 판매를 위한 매입액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잘못 공제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 대가 수수없이 공급시기 도래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동일한 거래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중 공제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조기 및 예정신고 시 환급받은 사업자가 확정신고에 중복으로 이미 신고한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잘못된 사례 안내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닌 사업자가 잘못 공제 *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공제대상이 아님 ○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업종별 · 항목별 주요 안내자료	
건설업	○ 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자료 성실신고 안내
건설업	○ 한국감정원 수집 아파트 시설공사 실적 자료
건설업	○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집한 전기검사 실적 자료
건설업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아파트 시설공사 자료
건설업	○ 소방시설공사 착공 내역 안내
전문서비스업	○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공인중개사 중개 실적 자료
전문서비스업	○ 세무사 불복 수입료 성실신고 안내
전문서비스업	○ 자동차 해체 활용업체 폐차 매입자료 안내
임대업	○ 특수관계자 간 무상임대 등 성실신고 안내



임대업	○ 임차인 확정일자권리부 분석자료 안내
임대업	○ 건물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안내
음식업	○ 의제매입세액 공제 관련 면세 매입비율 분석자료 안내
운수업	○ 운수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이외 매입 과다자료 안내
숙박업	○ 방역업체 사업자 성실신고안내
서비스업	○ 미용실 내부기준에 따른 봉사료 지급액 매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 크리에이터 콘텐츠 플랫폼수수료 지급 내역 안내
서비스업	○ 반려동물 미용서비스 및 용품 비대면 매출 신고 안내
서비스업	○ 프리랜서 플랫폼 매출액 신고누락 성실 신고 안내
서비스업	○ 키즈플랫폼을 통한 기타매출 관련 사전안내
서비스업	○ 골프부킹앱을 통한 지급수수료 관련 사전안내
도·소매업	○ 오픈마켓 등 실사업자 판매(결제)대행자료 안내
도·소매업	○ 제로페이(zeropay) 통한 매출액(결제금액) 안내
도·소매업	○ 주유소 사업자 면세유 매출액 안내
도·소매업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환전자료 등 매출 성실신고 안내
도·소매업	○ 장애인보장구 보조금 지급 내역 안내
도·소매업	○ 골프용품 도소매업자 성실신고 안내
공통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 신고금액 차이 분석 자료
공통	○ 통산 부가가치율 저조 사업자 신고 분석자료 안내
공통	○ 기타 현금매출 신고내역이 없는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공통	○ 간이과세 유형전환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참고 9 - 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 내용

내 용	현 행	개 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p>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p>세금계산서 발급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 (예외) 영수증 발급(신규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p>영수증 발급 적용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간 ·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로 사업 개시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p>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기간(1.1. ~ 12.31.) 다음해 1.25.까지 신고(연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신고의무
<p>세액계산구조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세액×업종별부가율)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 업종별부가율: 5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금액(공급대가)×0.5%)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 업종별부가율: 15 ~ 40%
<p>의제매입세액 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p>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 2.0%(~'21.12.31. 2.6%) · 기타사업자 1.0%(~'21.12.31.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21.12.31. 1.3%)
<p>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 세 : 공급가액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과세자 준용) · (미수취가산세 추가) 공급대가 × 0.5% ·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 공급가액의 0.5%

참고 10 - 신고내용확인 추정 주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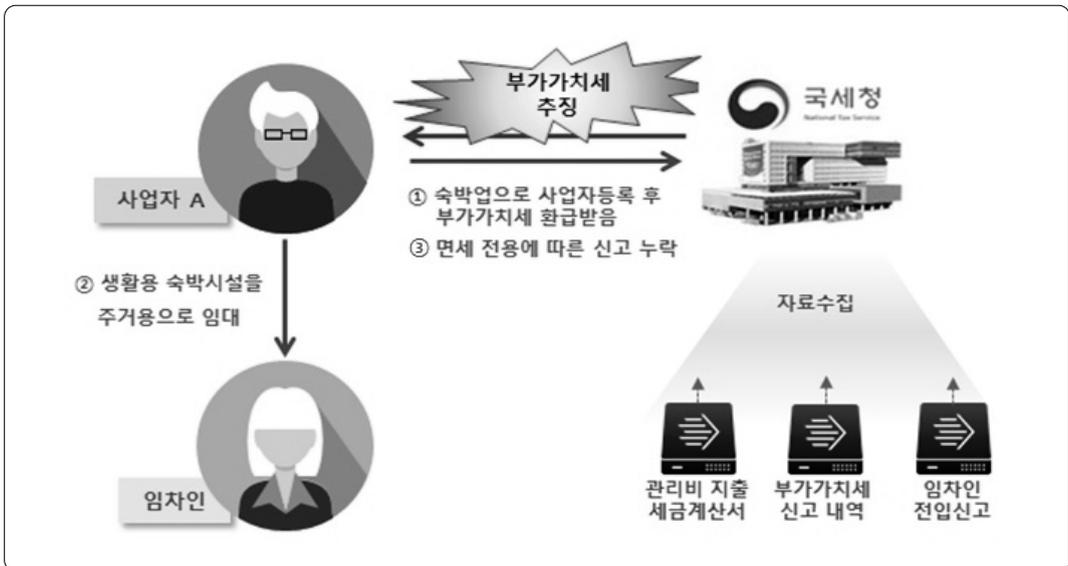
사례 1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을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면세로 전용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례

[분석 내용]

- 사업자 A는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을 분양받거나 매입하여 숙박업(과세 대상) 영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고정자산 매입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코로나19 등으로 관광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거용 임대*로 변경 운영하였으나 면세 전용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를 신고하지 않아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 면세사업으로 건물매입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

[조치 결과]

- 건물 관리비 내역, 임차인 전입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자 A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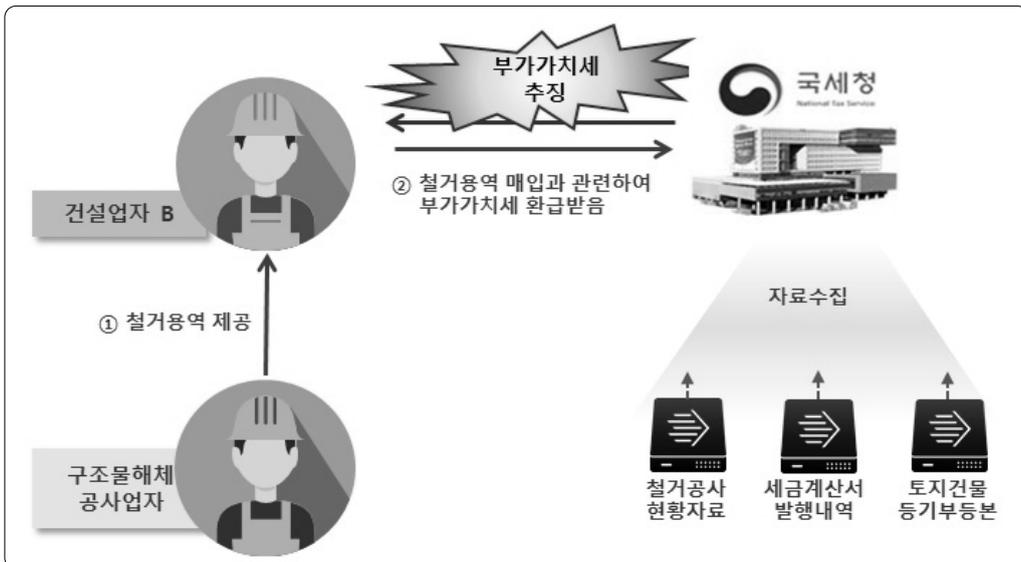
사례 2 건물 신축을 위해 토지·건물을 일괄 구입한 후 노후 건물을 철거하면서 수취한 철거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사례

[분석 내용]

- 건설업자 B는 상가건물 신축(과세대상)을 위해 노후건물과 토지를 일괄로 구입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 구조물해체 공사업자로부터 철거용역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건물 일괄 구입 후 기존 건물 철거 시 발생하는 철거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이나
 - 과세사업을 위해 소모되는 비용으로 오인하여 부당하게 공제 신고한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제2호

[조치 결과]

-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자 사업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철거대상 건축물 소재지 등을 확인하고
 - 사업자 정보,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토지·건물 취득시기 등을 분석하여 부당 공제받은 건설업자 B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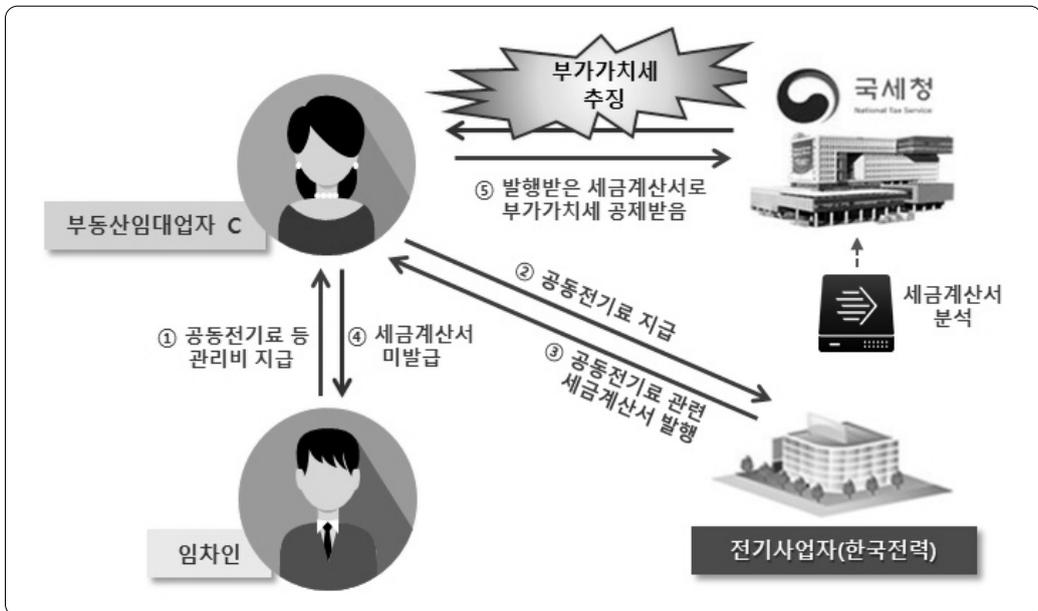
임대인이 전기사업자로부터 공동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사례 3 소비자(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담공제 받은 사례

[분석 내용]

- 부동산임대업자 C는 전기사업자(한국전력)로부터 본인 명의로 상가건물 공동전기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공동전기료 등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임대인)와 실제로 소비하는 자(임차인)가 서로 다른 경우
 -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이를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④

[조치 결과]

- 부동산임대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석하여 한국전력으로부터 수취한 전기료 내역을 확인하고
- 임차인에게 전기료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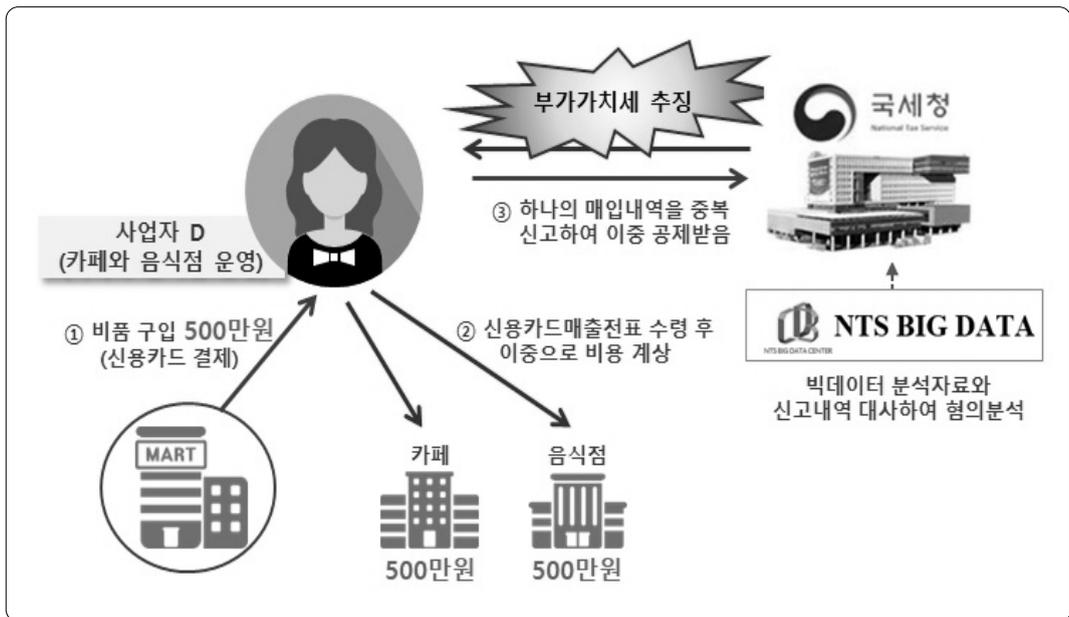
다수 사업장 운영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업 관련 비용을 사업장별로 중복 공제 신고하여 이중으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례

[분석 내용]

- 카페와 음식점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 D는 카페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품 등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면서, 음식점 관련 매입으로 중복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이중 환급받음
- 사업장별로 동일한 신용카드번호로 매입 신고한 것이 확인되고, 거래 상대방·거래 건수·금액 등에 비추어 하나의 매입거래로 중복 공제받은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조치 결과]

-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카드번호별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사업자D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내역과 대사하여
 - 빅데이터로 분석한 카드번호별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금액은 중복 신고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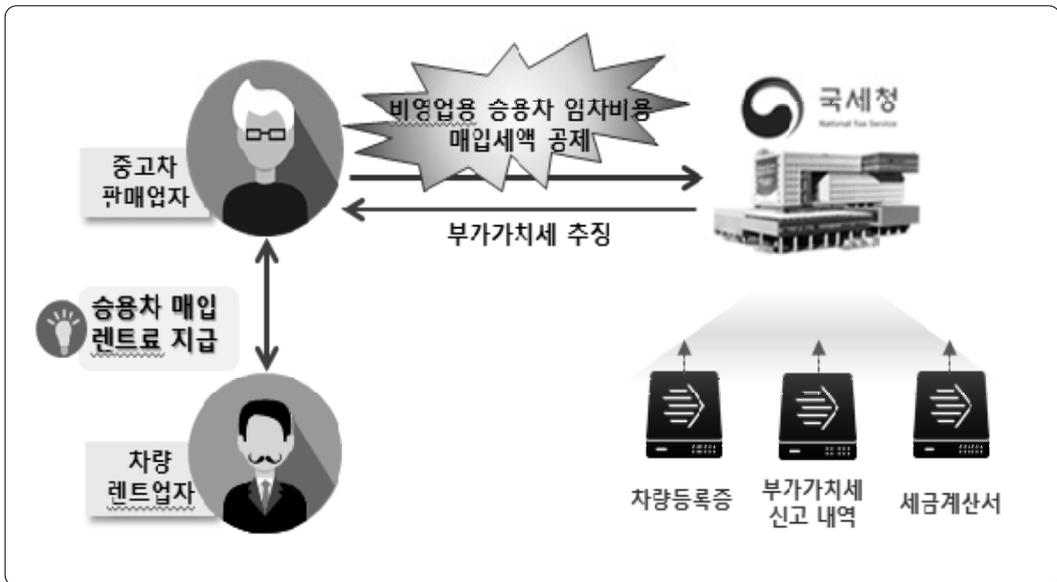
**고객 유치를 위한 이동수단 목적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비영업
사례 5 용 승용차)를 임차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부당공제 신고한
사례**

[분석 내용]

-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E는
 -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량의 임차(렌트)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받음
 -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1항 5호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조치 결과]

-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으로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 자동차판매업에 직접 영업으로 쓰이지 않아 그 임차 비용인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추정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운용 및 핀테크(Fintech)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46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 2021. 7

- (추진 배경)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 자산시장 등 호황산업을 중심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역외로 불법 유출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역외 비밀계좌 정보를 직접 수집·확보하여 글로벌 자금흐름 등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 (조사 착수)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역외 블랙머니 (black money,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뭇돈)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탈세하거나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① 역외 비밀계좌 운용) 국내외에서 불법 조성한 블랙머니를 역외에 실명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등으로 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 및 국외소득을 신고누락한 자산가 등 14명
 - ② 핀테크 이용 신종 역외탈세) 오픈마켓 역직구 판매금액이나 무역대금, 외국인관광객 판매액을 글로벌 PG사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취한 후 수입금액 탈루한 기업 등 13명
 - ③ 부당 내부거래) 로열티 과다지급·모회사 비용 대신부담·원천징수 누락 등 관계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한 다국적기업 등 19명

- (향후 계획) 세무조사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우리경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하면서도, 반칙과 특권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불공정 역외탈세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가겠습니다.



I 추진 배경

-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으며
 - 우리경제도 빠르고 강한 회복*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나, 여전히 코로나 리스크로 인한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 '21년 1분기 성장률은 1.6%로 OECD 평균(0.3%)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20~'21년 평균 성장률 전망(1.5%)은 주요 선진국·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21. 5. 31., 기재부)
-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 비대면·나홀로 산업 등은 전례 없는 호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 늘어난 유동성이 역외 개설한 비밀계고 계좌로 흘러가거나 투자목적으로 역외에서 은밀하게 역반입 되고 있으며
 - 이 과정에서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통한 송금·수취가 이루어져 과세 당국의 감시를 피해 소득이 탈루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단어로 금융서비스와 정보기술(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총칭(대한민국정책브리핑, 정책위키)
- 이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스위스 등 외국 과세당국과 공조하여 역외 비밀계좌 정보를 직접 수집·확보하였으며
 -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오픈마켓 거래 등 글로벌 자금흐름을 정밀분석하고, 관계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 등을 전격 검증하였습니다.
 - * Payment Gateway: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한 해외결제(간편결제, 소액결제 등) 대행

II 조사착수 및 착수유형

- 국세청은 역외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등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확인하고
 -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이번에 착수하는 유형은 역외 비밀계좌 운용,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 등 3가지 유형입니다.
 -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역외 비밀계좌 운용을 통한 국외소득 누락'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외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블랙머니를 실명 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등으로 역외에 계좌 개설·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세 신고누락한 자산가 등 14명

* Numbered Account: 계좌주가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표시되어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계좌

[예> 계좌주 : 12345bluediamond, 13579bomb 등]

- 두 번째는 '전자상거래 이용 기업의 핀테크(Fintech)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이며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역직구 판매액이나 무역대금, 병원·음식점 등 외국인 대상 판매액을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핀테크(Fintech) 플랫폼을 이용해 수취하고 수입금액 탈루한 기업 등 13명

- 세 번째 유형은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입니다.

거래구조 변경을 통한 로열티 과다지급, 제품 고가매입, 용역대가 과다지급, 무형자산 사용료 과소수취 등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부당이전한 다국적기업 등 19명

III 역외 비밀계좌 정보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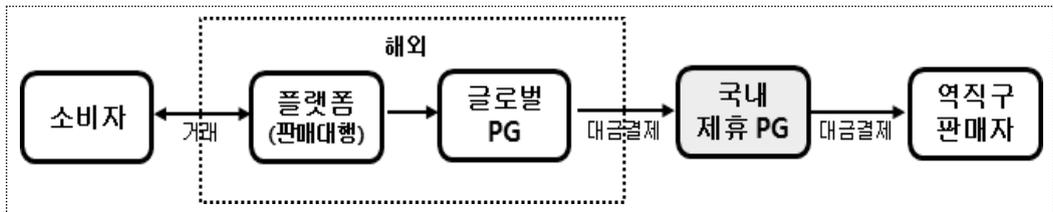
-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등 외국 과세당국과의 양자간* 협력 및 OECD가 주도하는 다자간**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 조세조약(94개국), 조세정보교환협정(12개국), 한·미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 **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128개국),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 109개국),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협정(78개국), 역외정보공조협의체(JITSIC, 41개국)
 - 이를 통해 그동안 역외 현금지급기 역할을 하며 금융비밀주의로 인해 접근하지 못했던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의 해외 금융계좌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 현재 양자 또는 다자간 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가 151개국('21년 5월 기준)에 이르는 등 이제 더 이상 역외에 자금을 은닉하여 탈세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과거에는 역외 개설 계좌가 '금융비밀주의*'와 계좌 소유주 이름이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표시되는 '숫자 계좌'의 존재로 인해 '비밀계좌'로 불리었으나
 - * 법원의 소환장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고객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다자간 금융정보교환협정'으로 스위스 등 많은 국가가 금융비밀주의를 포기
 - 이제는 '숫자 계좌'에 대해서도 국가간 정보교환을 통해 계좌소유주와 거래내역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역외 비밀계좌는 그 의의를 상실하였습니다.

- 특히 이번에는 강화된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역외 유명 은행 등에 은닉된 계좌정보를 확보하였으며
 - 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신고 자료, 외환거래자료, 소득세 등 세금 신고자료, 기타 수집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소득탈루 혐의자를 확인하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IV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 디지털경제의 확산, 금융기법의 고도화 등으로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면서 기업의 핵심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 핀테크(Fintech) 등 기술 발달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커머스(e-commerce) 등 플랫폼 경제는 더욱 심화되고 자본의 글로벌화로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 국내 이커머스 시장규모는 '20년 16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9.1%증가(통계청)
- 최근 국내·외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한 역지구 증가 등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이용한 대금 결제*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 1일 평균금액: '18년 4,273억 원→ '19년 5,316억 원→ '20년 7,055억 원(전년대비 32.7%↑, 한국은행)

〈인터넷 거래 지급결제 구조〉



-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역지구 등 온라인 판매뿐만 아니라 기업간 무역거래나 병원·음식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 등에서도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며
 - 이 과정에서 대금결제가 전자지급결제대행사 명의로 이루어져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신종 탈세수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에서는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가 국내로 지급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소득탈루 혐의자를 확인하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V 주요 착수 사례

- 이번에 착수하는 조사대상자의 유형별 주요 착수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 역외 비밀계좌 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에 활용하고,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이용한 소득 탈루 등 신종 탈세수법을 확인하였습니다.

유형	주요 탈루혐의
역외비밀 계좌운용	<p>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 등 해외 발생소득 ○○억 원을 역외 비밀계좌에 은닉하면서 해외금융계좌 및 국외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 명의신탁 주식과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및 해외 체재비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 신고 누락</p> <p>해외 페이퍼컴퍼니 끼워 넣기를 통해 조성한 법인자금과 해외 미신고 법인의 배당소득 등을 통해 조성한 ○○억 원을 역외 비밀계좌에 은닉하여 관리하고, 해외 고가부동산 취득 등 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 해외금융계좌 및 국외소득 신고 누락</p>
핀테크 (Fintech) 이용 신종 역외탈세	<p>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화장품, 잡화 등을 역직구 판매하면서 발생한 매출액을 자녀의 사이버 가상계좌를 경유하여 글로벌 PG사의 핀테크(Fintech) 플랫폼을 통해 수취한 후 판매액을 전액 신고누락하고, 수취자금은 자녀의 법인설립 및 유상증자 납입대금 등으로 사적사용하고 증여세 신고누락</p> <p>국내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환자로부터 미용·성형 의료용역 대가를 PG사를 경유하여 정산·수취하면서 관련 수입금액을 전액 신고누락하고, 가족 명의 거래처를 다수 설립하여 사업경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 탈루</p>
부당 내부 거래	<p>모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율을 임의로 인상하여 법인자금을 변칙 유출하고, 모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IT 서비스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 소득을 국외로 부당이전</p>

VI 추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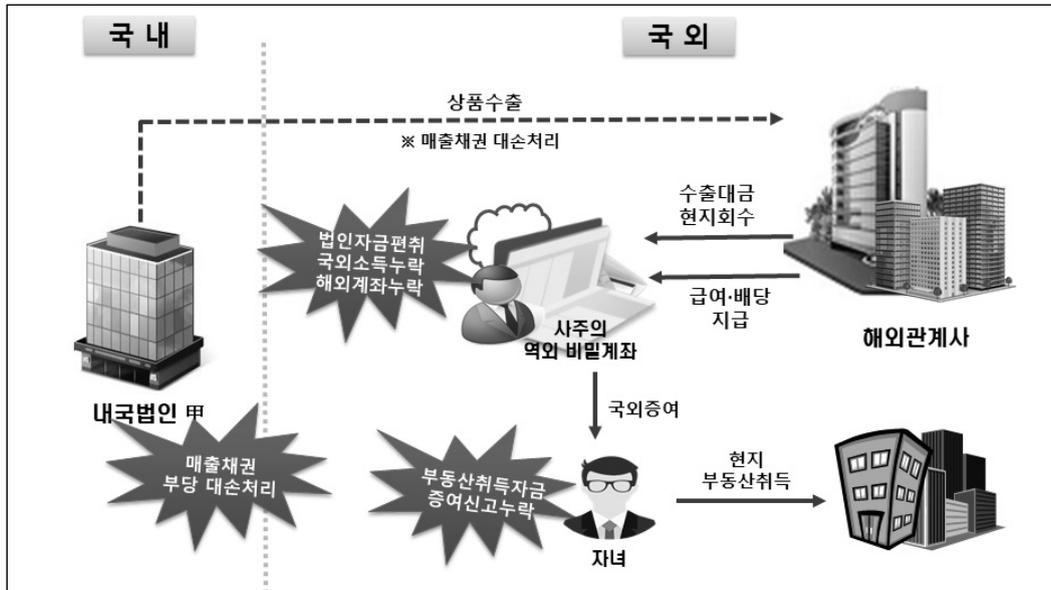
- 국세청은 '19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372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조 4,548억 원('19년 5,629억, '20년 5,998억, '21년 2,921억)의 탈루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 * '19. 5. 16.(104명), '19. 11. 20.(171명), '20. 8. 27.(43명), '21. 3. 24.(54명)
 - 특히 올해 3월, 국적세탁 세금암체족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VII 향후 추진방향

- 이번 조사는 법체계를 무력화하며 반칙과 특권으로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역외탈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제사회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공조하고 있고 금융비밀주의도 사실상 해체되고 있어
 - 예전처럼 역외에 몰래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탈세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PG사 경유 등 글로벌 자금거래도 투명하게 검증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국세청은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신종 탈세유형 발굴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국가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불공정 역외탈세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 주요 착수 및 기초사 사례

사례 1 법인 채권 등을 사주가 현지에서 회수하여 역외 은닉·사적사용
 * 해외법인 채권을 사주가 현지 회수하고, 현지법인 급여·배당 등을 역외 비밀계좌로 운영하면서 제세 신고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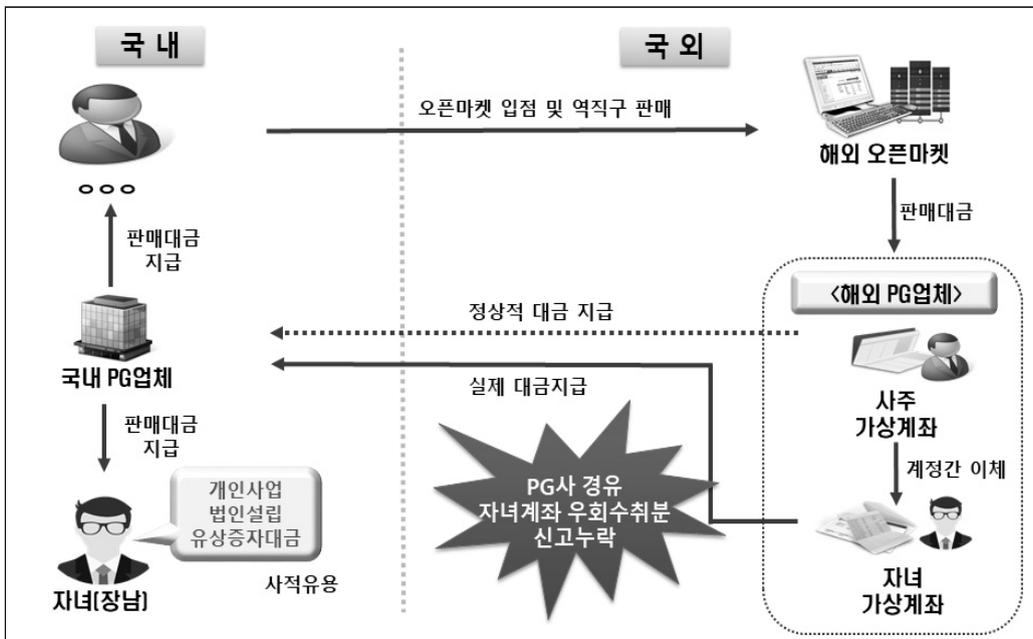
- 주요 탈루혐의

- 내국법인 甲은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제품을 수출한 후 현지에서 사주가 대금을 받아 역외 비밀계좌에 은닉하고
 - 법인은 장부상 회수하지 않은 것처럼 장기 매출채권으로 관리하다 회수불능으로 대손상각 처리
- 사주 ○○○은 현지법인을 실제 지배·관리하면서 현지법인으로부터 급여, 배당 등을 수취하여 역외 비밀계좌로 관리하면서, 관련 소득과 해외금융계좌 신고누락
- 유학 중인 자녀에게 비밀계좌 자금을 증여하여 자녀가 다수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관련 증여세 신고누락

● 조사 방향

- 역외 비밀계좌 운용 내역 및 해외 특수관계법인 관련 국제거래 적정여부 면밀히 검증

사례 2 온라인 오픈마켓 '역직구'매출액을 우회 수취하고 수입금액 탈루
*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역직구' 판매금액을 PG사를 경유 자녀 계좌로 우회 수취 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하고, 자녀는 이를 사적사용하고 증여세 탈루



● 주요 탈루 혐의

- ○○○은 국내외 오픈마켓(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화장품, 잡화 등을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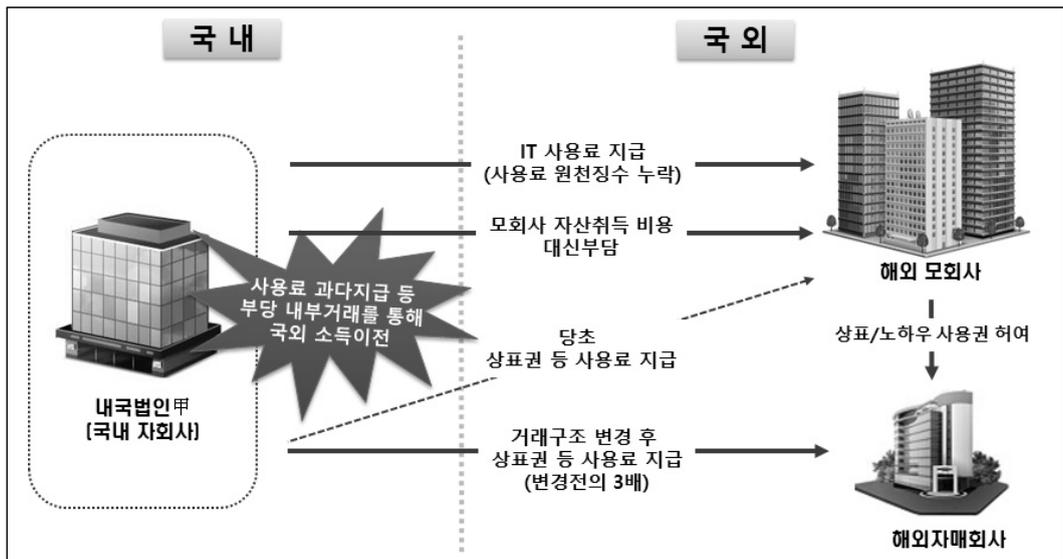
업자로

- 해외 오픈마켓의 역직구를 통해 발생한 수입금액을 역외에서 가상계좌로 수취한 후
- 자녀(장남)의 가상계좌와 국내 PG사를 경유하여 국내로 변칙반입하고, 이를 전액 신고누락
- 자녀는 PG사로부터 우회 수취한 금액을 개인 사업, 법인 설립 및 유상증자 납입대금 등으로 사적사용하고, 사적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 누락

● 조사 방향

- 역직구 판매액 등 자금흐름·사용에 대해 면밀히 조사

사례 3 **사용료 과다지급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외 소득이전**
 * 거래구조를 바꾸어 사용료를 과다지급하고, 모회사가 부담할 자산취득 비용을 대신 부담 및 모회사에 지급한 IT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 누락



● 주요 탈루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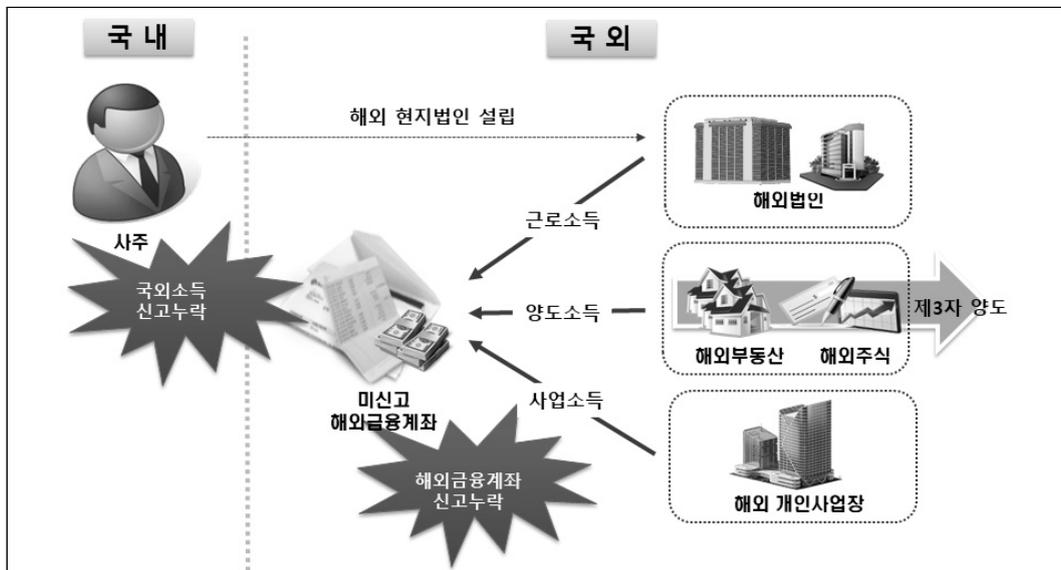
- 내국법인 甲은 미국 모회사에 지급하던 사용료를 해외자매회사에 지급하도록 거래 구조를 변경하고
 - 당초 지급하던 사용료의 3배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계약을 변경하여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
- 미국 모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관계회사 주식 등 자산 취득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고
 - 사용료에 해당하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 사용대가를 지급하면서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

● 조사 방향

- 거래구조 변경 및 사용료 지급액 적정여부, 법인 지출비용 및 사용료에 대한 조약상 원천징수 적정여부 검토

사례 4 해외발생 사업소득 등 신고 누락 및 역외 은닉
* 해외발생 근로·사업소득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외주식·부동산 양도소득 신고 누락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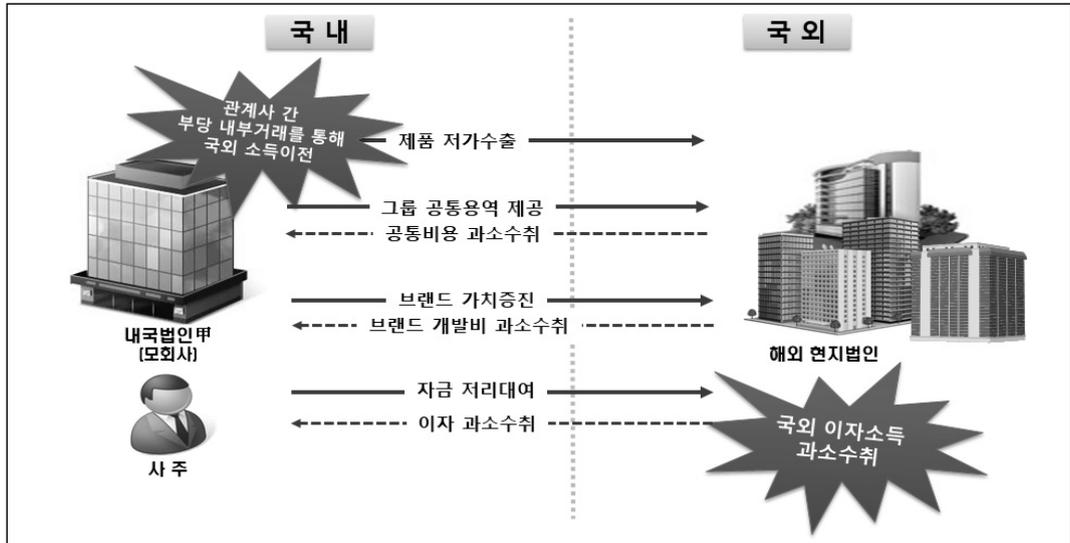
● 조사 내용

- ○ ○ ○는 국내외에서 무역업, 부동산 임대업 등 다수의 사업을 활발하게 영위하면서
 - 중국, 홍콩 등 국외에서 벌어들인 근로,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역외 계좌로 운용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누락
 - ※ 해외 과세당국으로부터 수보한 금융정보교환자료를 통해 역외 계좌 보유내역과 잔액을 확인
- 또한 국외 주식 및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을 역외에 은닉

● 조사 결과

- 국외소득 미신고에 대한 소득세 00억원을 부과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원 부과 및 검찰 고발

사례 5 **관계사간 불공정 내부거래를 통해 법인자금 부당 유출**
 * 특수관계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그룹 용역대가 및 브랜드 개발비 과소 수취, 제품 저가 수출 및 관계사 주식 저가 양도 등을 통해 법인자금 부당 유출



● 조사 내용

- 내국법인 甲(모회사)은 여성의류, 잡화 등 제조업체로 국내·외에 많은 매장을 운영 중
- 법인은 그룹 공동용역(Intra-Group Service), 글로벌 마케팅비 등을 대신 부담한 후 해외 관계사들에게 관련 비용을 과소 청구하고
 -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면서도, 상표권자로부터 브랜드 개발비 (Brand development Cost)를 과소 수취
- 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 제품을 저가 수출하고 특수관계법인에 현지법인 주식을 저가 양도하는 등 소득을 부당이전
- 사주 ○○○는 해외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정상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수취하면서 이익 분여

● 조사 결과

- 용역대가 및 브랜드 개발비 과소수취, 제품 저가수출, 대여금 이자 과소 수취 등에 대해 법인세 등 000억원 추정